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08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증권 양도로 발생한 수입 과세대상 소득 제외(한정애의원안)	3

I. 개요

1.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08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4. 24.
- (3) 회 부 일 : 2025. 4. 25.

나. 제안이유

종업원소유제도는 종업원들이 자사 주식을 장기 보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이윤공유와 참여경영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핵심적 정책 수단을 말함. 이는 자본 소유의 편중 해소와 노동 소외 문제를 직접적으로 시정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자산 증대와 고용 안정성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한국형 종업원소유제도로써 우리사주제도는 현재 우리사주 지분율이 미미한 수준이고 보유기간도 단기에 그치는 등 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미국, 영국과 달리 주주들의 보유지분 매각에 대한 특별한 이익 동기가 없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음.

한편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CEO 고령화로 인한 기업승계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나 경쟁사 매각,

가족 승계 등이 주요 승계방안으로 거론되나,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주의 보유지분 종업원 매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와 바람직한 기업승계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이는 고용유지, 참여를 통한 혁신, 불평등 완화,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

다. 주요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로 주식을 양도하거나 우리사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 등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서 제외함(안 제4조제6항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증권 양도로 발생한 수입 과세 대상 소득 제외(한정애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과세소득의 범위(제4조) ○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 (제1항) ○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 (제4항) <u><신 설></u>	☐ 과세대상 소득 제외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제1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양도하거나 우리사주 전환가능증권 등을 양도해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 시행일: 2026. 1. 1.

* 한정애의원안 2025. 4. 24. 발의(의안번호 10082)

☐ 개정안은 현행 과세소득의 범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양도하거나 우리사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 등을 양도하여 생기는 수입을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를 의미¹⁾하고,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의미²⁾함.

1)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제4호

2)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제5호

이러한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³⁾.

우리사주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우리사주제도의 전신인 종업원지주제도가 1968년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도입되었는데, 이후 정부는 1974년 5월 29일 기업의 체질개선과 내자동원을 위한 조치로 우리사주조합의 결성을 촉구하는 대통령 특별조치 발표 이후 같은 해 7월 13일 재무부장관이 종업원지주제도 확대실시 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리사주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당시 기업에 대한 주요 세제지원으로는 기업이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으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고⁴⁾, 기업이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자사주 취득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비과세하며⁵⁾,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3)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우리사주조합의 목적)

4) 「舊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舊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457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

이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등의 내용이었음⁶⁾.

2001년 「근로복지기본법」이 제정되어 2002년부터 시행되면서 소위 성과배분형·이윤공유형의 ‘신 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됨.

이전 세제지원에 더하여 이뤄진 주요 세제지원으로는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을 법인세 계상시 전액 손비로 인정하고⁷⁾,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신설을 통해 조합원(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우리사주 배정 시 소득세 비과세,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등의 내용임⁸⁾.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건근로자를 포함한다.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7)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에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6.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8)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제1항, 제8항)

□ 2025년 5월 기준⁹⁾ 총 3,838개의 법인(1,951개 상장법인 및 1,887개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였고, 1,425개의 법인(805개 상장법인 및 621개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를 한국증권금융에 예탁¹⁰⁾하고 있음.

또한,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20%를 우리사주조합원에 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¹¹⁾.

-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제2항)
- 우리사주 배정 시 소득세 비과세(제3항, 제4항)
- 우리사주 조합원의 인출금에 대하여 조건부 비과세(제5항, 제6항)
-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제9항)
-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제13항)

9) 한국증권금융 홈페이지, 「통계자료」

10)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우리사주의 예탁 등)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수탁기관)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말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수탁기관) 영 제22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말한다.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법인”이라 한다)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①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한국거래소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

[우리사주조합 결성 현황(2025. 5. 기준)]

(단위 : 개)

구분	유가증권	코스닥	비상장	총계
결성 조합수	720	1,231	1,887	3,838

자료 : 한국증권금융 홈페이지

[우리사주 예탁 현황(2025. 5. 기준)]

(단위 : 개, 천주, 억원)

구분	유가증권	코스닥	비상장	합계
예탁 조합수	321	484	621	1,426
예탁 주식수	321,299	65,542	78,467	465,308
시가	92,120	5,585	6,153	103,858

자료 : 한국증권금융 홈페이지

상기한 세제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사주 지분율이 미미한 수준이고 보유기간도 단기에 그치는 등 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우리사주 지분이 존재하는 상장기업은 884개사(분석대상 상장기업의 36.7%)로, 이들 상장기업의 우리사주 지분 평균은 1.08% 수준임¹²⁾.

또한, 2015년¹³⁾ 정부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당시, 취득한 우리사주를 단기 매도(5년 미만 보유 비율 51.2%)하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함¹⁴⁾.

권시장을 말한다.

12)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현황과 특징」, 『이슈보고서』 24-20, 2024. 10. p. 5.

13) 정부 발표기준 최신 자료

14) 관계부처 합동,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2015. 2.

이에 더해, 퇴직한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¹⁵⁾에 마련되어 있는데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개정안은 법인의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개정안은 다음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첫째, 「근로복지기본법」¹⁶⁾에서는 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바,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

* 우리사주 보유기간 분포(% , '14년말) : (1년 미만) 12.1, (1~2년) 10.8, (2~3년) 9.5 (3~4년) 10.4 (4~5년) 8.4 (5년 이상) 48.8

15)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⑭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양도소득에 포함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약된 것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16)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조합의 의결권 행사) ① 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때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사한다.

1.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거나 의결권 행사의 위임 요청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조합원에게 해당 의결권을 위임할 것
2.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해당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의사표시가 없거나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할 것
- ②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조합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행사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과 같은 비율대로 행사할 것
 2. 해당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할 것
 3.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행사할 것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시킴으로써 고용유지, 참여를 통한 혁신, 불평등 완화 등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음.

둘째, 법인 입장에서든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인수희망자가 아닌 우리사주조합에게 자사주를 양도함으로써 기업 방어의 유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

근로자 입장에서든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적대적 인수합병이 성공하면 본인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될 것임을 우려하기 때문에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면 인수희망자의 주식보유 비율을 희석시키고 기존 경영진과 의사결정을 합치시킬 수 있음¹⁷⁾.

□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기본적인 법인세 과세체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인세법」 제7관(비과세 및 소득공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 「법인세법」 제4조¹⁸⁾에서는 기본적인 법인세의 과세소득 범

17) 牛丸與志夫, “會社の支配權の爭奪と従業員持株制度(一)”, 『商事法務』 第1108號, 商事法務研究會, 1987, 31面; 권재열,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방안의 현실적 평가: 우호적 주주의 확보에 의한 경우를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05, p. 163.

18)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清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 7. (생략)

위가 규정되어 있음.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여 소득의 과세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음.

[법인 종류별 소득의 과세범위]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	전세계 소득	○	○	○
	비영리	전세계 소득 중 수익사업	○	×	×
외국법인	영리	국내 소득	○	×	×
	비영리	국내 소득 중 수익사업	○	×	×
국가·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		비과세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그런데, 개정안은 「법인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의 예외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법인의 특정한 수입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제외하는 사항은 현행법 제14조의 이월결손금, 제51조의 비과세소득(공익신탁재산소득 등) 및 제52조의 소득공제(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개별 조문의 근거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규정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한 측면이 있음.

둘째, 현행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세제혜택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 및 타 세제혜택제도와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도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출연할 때 세제지원¹⁹⁾을 하고 있고, 법인
자사주를 양도대상(우리사주조합, 일반)에 따라 과세여부를 달리할
경우 정상적인 시장 거래 및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다는 입장임.

- 참고로,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
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내
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083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
가 있고, 조합원 자격을 ‘실시회사 및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의 임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084호) 논의결과를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음.

19) ○ 우리사주조합 활성화를 위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해 기부금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손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19.16호)
○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자사주 저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국세 기
본통칙」-법인세법 52-88-3)
*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지 않음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해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시 시가와 매수가액 차액 손
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19.19의2호)

문 의 처
02)6788-5154